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5호 2018. 12. 17.(월)

조 례

-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 47
-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53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62
-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64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73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76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82
-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 83
-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 ----- 85
-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 98
-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103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113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6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5호 2018. 12. 17.(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18

공 고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0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 144

기 타

- 시정 알림판 ----- 145

회람							
----	--	--	--	--	--	--	--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5호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조문의 제목 “투자유치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관 등”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③ 시장은 산단분양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기업유치단은 시의원,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며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목포시세감면조례」를 “재산세는 「목포시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투자유치자문관)①·②(생략) 〈신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등)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산단분양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기업유치단은 시의원,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며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목포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 ----- 재산세는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6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1조(용역결과 관리) ① 용역 업무(학술용역) 관련 주관 실과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역 주관부서장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
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용역결과 관리) ① 용역 업무(학술용역) 관련 주관 실과 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용역 주관부서장은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u>제11조 · 제12조 (생 략)</u>	<u>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u>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7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회계업무담당 부서장, 문화예술담당 부서장, 징수업

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

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신 설>

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신 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회계업무담당 부서장, 문화예술담당 부서장, 징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신 설>

<신 설>

<신 설>

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

<신 설><신 설>

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신 설>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비밀유지등) 전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4조(생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8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관리국**”을 “**기획문화국**”, “**관광경제수산업**”을 “**관광경제국**”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성장동력실**”을 “**기업유치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성장동력실장은**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미래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기업유치실장은** 산단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획관리국에 두는 과**)”를 “(**기획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목포시의료원 지도·감독, 지방보조금 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을 “**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미디어마케팅,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

방보조금 관리, 미디어마케팅,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5. 회계·계약, 청사관리, 재산관리, 동청사 신축조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 운영, 정보·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자치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관광경제수산국에 두는 과)”를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관광경제수산국에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산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하고, 제5호의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 해양수산물복합벨트”를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으로 하고, 제6호의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에너지관리, 축산, 학교급식지원, 상정·소상공인”을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홍보,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지식·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미래성장산업, 신재생에

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서종합 개발, 해양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6.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를 “안전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보건일반행정, 의약관리, 위생관리 전반, 공중·식품위생”를 “보건일반행정, 의약관리, 위생관리 전반, 공중·식품위생, 목포시의료원 지도·감독”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도시보건, 예방,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재활 업무”를 “도시보건, 예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재활 업무”로 한다.

제16조제1호 “교육문화사업단”을 “환경관리사업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가목,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목, 마목, 바목을 삭제한다.

가. 환경정책·환경보호, 개인하수처리, 환경지도, 기후변화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청소행정, 청소지도, 폐기물처리, 자원활용,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에너지센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제16조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 다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삭제>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몽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관리, 하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호가목 중 “도시재생, 원도심사업 관련 개발행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산단조성, 택지개발, 옥암지구, 환지 업무”를 “문화재보존 관리·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원도심사업 관련 개발행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지구, 환지 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호 “환경시설관리사무소”를 “문예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 같은 호 가목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에너지센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 문학관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5호가목을 제7호가목으로 변경하고,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가.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6. 목포자연사박물관

가.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동차등록사무소

가.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운행에 대한 범칙자 처리, 자동차과태료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사항**”을 “**감사실, 기획문화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성장동력실, 관광경제수산국, 교육문화사업단,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사항**”을 “**기업유치실, 관광경제국, 환경관리사업단,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사항**”으로 한다.

②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농업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⑪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⑫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성장동력실장”을 “기업유치실장”으로 한다.

⑰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⑱ 목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⑫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목포시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제26조제3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농업수산물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상정담당주사**”를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⑯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

⑰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도시재생과장**”을 “**도시문화재과장**”으로 하고, “**도시개발행정담당주사**”를 “**도심개발담당주사**”로 한다.

⑱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⑲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관경경제수산물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자원순환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③⑩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환경경제수산물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③⑪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환경경제수산물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청소지도담당**”을 “**청소행정담당**”으로 한다.

③⑫ 목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환경경제수산물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③⑬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환경경제수산물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③⑭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환경경제수산물국장, 환경보호과장, 공원녹지과장, 경관사업과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 환경보호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③⑮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③⑯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③⑰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③⑱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③⑲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문화지원담당주사**”를 “**문화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④①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④②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일자리정책과장**”을 “**지역경제과장**”로 한다.

④②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일자리정책과장**”을 “**지역경제과장**”로 한다.

④③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농업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④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④⑤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 문예시설관리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④⑥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체육시설관리과**”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한다.

④⑦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④⑧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④⑨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8조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⑤⑩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제3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⑤⑪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정수담당**”을 “**상하수도사업단 수도과 정수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한다.

⑤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5항제2호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7.12.31, 2008.7.28, 2009.8.3, 2010.3.29, 2011.6.20, 2011.12.26, 2012.3.30, 2012.12.17, 2013.6.19, 2014.12.29, 2016. 6. 7.>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재활용선별장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상하수도사업단 · 수 도 과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 남해수질관리과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 북항수질관리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시민문화체육센터 · 목포문학관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목포체육관 · 실내수영장 · 유달경기장 · 시립정구장 · 시립테니스장 · 시민테니스장 · 목포파크골프장 · 부주산테니스장 · 목포시궁도장 · 부주산축구장 ·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 부주산족구장 · 영산호카누경기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90(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목포자연사박물관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시 삼학로 92-98(산정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관리국</u> , 자치행정복지국, <u>관광경제수산국</u> , 안전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 <u>기획문화국</u> , 자치행정복지국, <u>관광경제국</u> ----- ---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직속에 감사실, <u>성장동력실</u> 을 둔다. 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u>성장동력실장은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미래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업무</u> 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 <u>기업유치실</u> ----- ----- ----- <u>기업유치실장은 산단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u> 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u>기획관리국</u> 에 두는 과) ① <u>기획관리국</u> 에 기획예산과, 공보과, <u>일자리정책과</u> ,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6조(<u>기획문화국</u> 에 두는 과) ① <u>기획문화국</u> 에 기획예산과, <u>문화예술과</u> ,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u>기획관리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u>기획문화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 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목포시의료원 지도·감독, 지방보조금 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u>	1. <u>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 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미디어마케팅,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u>
2. <u>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2. <u>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u>
3. <u>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u>	3. <u>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4. <u>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식·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국제교류 및 협력, 일자리·고용업무, 청년 정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	4. <u>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u>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둔다.

② 자치행정복지국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신 설)

3. ~ 6. (생 략)

제8조(관광경제수산물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수산물국에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산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서종합개발, 해양레저 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 해양수산물복합벨트 업무에 관한 사항

4.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에너지관리, 축산, 학교급식지원, 상정·소상공인 업무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환경보호, 개인하수처리, 환경지도, 기후변화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둔다.

②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사항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지식·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미래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서종합개발, 해양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u>6. 청소행정, 청소지도, 폐기물처리, 자원활용,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u> 제10조(안전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u>공원녹지과</u>를 둔다 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6.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u> 제10조(안전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 2. (생략) 3. <u>보건일반행정, 의약관리, 위생관리 전반, 공중·식품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u> 4. (생략) 5. <u>도시보건, 예방,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u>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보건일반행정, 의약관리, 위생관리 전반, 공중·식품위생, 목포시의료원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5. <u>도시보건, 예방, 중독관리통합정신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u>
제16조(소관사무) 사업단·소별 단장 및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교육문화사업단</u> 가. <u>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u> 나. <u>문화예술진흥, 문화재보존 관리·발굴,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 예술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u> 다. (신설)	제16조(소관사무) ----- -----. 1. <u>환경관리사업단</u> 가. <u>환경정책·환경보호, 개인하수처리 환경지도, 기후변화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u> 나. <u>청소행정, 청소지도, 폐기물처리, 자원활용,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u> 다. <u>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에너지센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u>

라.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 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단

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뽕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관리, 하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발전사업단

가. 도시재생, 원도심사업 관련 개발행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산단조성, 택지개발, 옥암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2. 상하수도사업단

가. (삭 제)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뽕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관리, 하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발전사업단

가.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나. 문화재보존 관리·발굴, 근대역사 공간조성, 원도심사업 관련 개발행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가.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에너지센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자동차등록사무소

- 가.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범칙자 처리, 자동차과태료 업무에 관한 사항

6. <신 설>

- 가. <신 설>

7. <신 설>

- 가. <신 설>

4.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가.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가.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6. 목포자연사박물관

- 가. 목포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동차등록사무소

- 가.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운행에 대한 범칙자 처리, 자동차과태료 업무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교육문화사업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교육지원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문화예술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노적봉예술공원	목포시 유달로 116(유달동)
문예시설관리과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 시민문화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 목포문학관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유달경기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시민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 부주산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목포시공도장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 부주산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 부주산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 영산호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삼학로 92-98(산정동)
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 양율로 177(용당동)
· 상하수도행정과	목포시 양율로 177(용당동)
· 수 도 과	목포시 양율로 177(용당동)
· 몽탄정수장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 하 수 과	목포시 양율로 177(용당동)
· 남해환경관리과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 북항환경관리과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도시발전사업단	
· 원도심사업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도시개발과	
·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 음식물자원화시설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 재활용선별장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관리사업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환경보호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자원순환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환경시설관리과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 음식물자원화시설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 재활용선별장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수 도 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몽탄정수장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 하 수 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남해수질관리과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 북항수질관리과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 시민문화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 목포문학관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유달경기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시민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 부주산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목포시공도장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 부주산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 부주산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 영산호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삼학로 92-98(산정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9호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해”를 삭제하고

“다만, 동장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추천된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기준 이외로 3회를 추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를 “단, 공고 후 동장이 인정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심사위원은 동장 외 4명(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2명)으로 한다. 다만,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③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해</u>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동장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추천된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기준이외로 3회를 추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u>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③-----<삭 제>----- ----- 단, 공고 후 동장이 인정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심사위원은 동장 외 4명(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2명)으로 한다. 다만,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0호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
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1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1항 “월 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하며, 2항 “대상자 중 유공자 본인이 ”를 “대상자가 ”로 한다.

제10조 중 2항 “받은 사람 중 유공자 본인이 ”를 “받는 사람 중에서 ”로 한다.

제12조 중 2항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를 “매월 20일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 1월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월30,000원</u> 의 보훈명예수당 (이하 “명예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u>대상자 중 유공자 본인</u> 이 사망한 경우에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 <u>월50,000원</u> ----- ----- -----. ②----- <u>대상자가 “삭제”</u> ----- -----.
제10조(지급대상) ②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u>받은 사람 중 유공자 본인</u> 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지급대상) ②----- ----- <u>받는 사람</u> 중에서 “삭제” ----- --.
제12조(지급결정 등) ②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u>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u> , 사망 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지급결정 등) ②----- ----- <u>“매월 20일에”</u> , ----- ----- -----.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2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월 50천원 지급”을 “월 70,000원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 1월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생략)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 이라 한다)을 월 <u>50천원</u> 지급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 이라 한다)을 월 <u>70,000원</u> 지급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3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중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영산로66(무안동)에 둔다.”를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옥암동 10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옥암동 1021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4호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

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평가의 실시

제5조(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제출 전

제8조(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목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

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목포 시민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목포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실·국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평가 교육) ① 시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기관)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목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하며”를 “평가하며”로 한다.

제28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5호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서비스 업소 중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인상 요인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2회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목포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다음 각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6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8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u> ①<u>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목포시 관할구역 내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u> ②<u>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u>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u>	<u>제8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u> <u>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3·12·29, 개정 2008·10·20> ②. (생략)</u>	
--	--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7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차선”을 “2차선 또는 폭원 6미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3.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유수면 및 저수지, 유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제28조 제목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건폐율은**”을 “**건축물의 건폐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별표 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타목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u>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u>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7.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1.~4. <신 설> ③ ~④ (생 략)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 -----<단서 삭제> 1. ----- ----- 2차선 또는 폭원 6미터 이상 ----- -----. 2.~7.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u> 2. <u>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u> 3. <u>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유수면 및 저수지, 유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15. (생 략)	제2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5. (현행과 같음)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

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신 설>

-----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
건축물의 건폐율은 ----- . 다만,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

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8] <개정 2014. 8. 18., 2017. 7. 1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6호 관련) 가.~카. (생 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 파.~터. (생 략)	[별표 18] (현행과 같음)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6호 관련) 가.~카. (현행과 같음) 타. -----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u> 파.~터. (생 략)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8호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 체결한 보험 또는 시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것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09호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기구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기구의 정기시설검

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3년간 작성·보관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유지관리업무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1. 안전점검 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의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안의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줄의 꼬임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금이 간 곳의 존재
	페인트 칠이 벗겨짐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 분	점 검 항 목
미끄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착지판의 흠 및 물의 존재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녹슨 부분은 없는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손잡이가 흔들림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기구의 금이 간 곳
	페인트 칠이 벗겨짐
	돌출부나 거칠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철봉	파이프가 휘어짐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금속부분의 녹 발생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페인트 칠이 벗겨짐
	돌출부나 거칠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	점 검 항 목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손잡이의 파손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축의 강도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페인트 칠이 벗겨짐
	돌출부나 거칠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페인트 칠이 벗겨짐
	돌출부나 거칠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금속부분의 녹, 목재부분의 부식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페인트 칠의 벗겨짐
	돌출부나 거칠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2. 점검방법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제6조 관련)

□ 놀이시설 명(부대시설 등) :

[illegible]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0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다만 허가대상은 감리자, 신축신고 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사용승 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기타 소규모 신축신고 건축물”을 신설한다.

제22조제1항 중 “건축허가·사용승인”을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법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 건축물” 과 같은 항 제7호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신설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목포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직접선정 하되 해당”을 삭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목포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단서 신설></u>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허가대상은 감리자, 신축신고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다.</u>
1. ~ 2. (생략) 3.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u>기타 소규모 신축신고 건축물</u>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u>건축허가·사용승인</u>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u>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u>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u>	1. <u>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 건축물 포함)</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 7. (신설)	6. <u>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u>

② (생 략) 1. <u>시장이 목포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직접 선정하</u> <u>되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u> <u>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u> <u>의 건축사로 지정한다.</u>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 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u>목포지역건축사협회와 협</u> <u>의하여 지정</u>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u>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u> <u>건축물</u> 7. <u>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u> <u>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u> ② (현행과 같음) 1. <u>시장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u> <u>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u> <u>의 건축사로 지정한다</u>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 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u>지정</u>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1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은 1구획당 6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 운영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 및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5. 그 외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으로 갈음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소 60분까지	60분 초과 후 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소형	무료	500	5,000	50,000	40,000	85,000
대형	600	600	8,000	65,000	52,000	115,000

<비고>

1. 주차장 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월 별	주간시간	비고
· 노상주차장	4월 ~ 10월	09:00~19:00	
	11월 ~ 3월	09:00~18:00	
· 노외주차장	4월 ~ 10월	09:00~20:00	
	11월 ~ 3월	09:00~19:30	

3.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4. 제3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범납세자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마)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바)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장은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		-----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영		-----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지		--.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		
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전		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은 1구획		
용 주차장을 제외한 유료 공영		당 6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주차장에 대하여서는 1구획당 3		있으며, 공휴일 등 운영 관리상		
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다.		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업제후유증 환자, 장기기증자		을 감면할 수 있다.		
및 장기기증 등록자, 의사상자		1.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5.18		
본인과 유가족, 「전통시장 및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업제후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유증 환자		
상인 및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		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		록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		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		
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		인 및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		
차,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		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 보전		
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		

의 100분의 60을 감면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4조(주차거부 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5. 그 외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으로 갈음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주차거부 금지) -----

-----.

2.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회 주차요금(1구획당)</th><th rowspan="2">1일 주차권</th><th colspan="3">월정기 주차권</th></tr><tr><th>최초 30분까지</th><th>30분초과후 30분마다</th><th>주간</th><th>야간</th><th>주.야간</th></tr><tr><td>소형</td><td>500</td><td>500</td><td>5,000</td><td>50,000</td><td>40,000</td><td>85,000</td></tr><tr><td>대형</td><td>600</td><td>600</td><td>8,000</td><td>65,000</td><td>52,000</td><td>115,000</td></tr></table> 〈비고〉 1. ~ 3. (생략) 4. (생략) (가)~(아) (생략) <신설>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후 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소형	500	500	5,000	50,000	40,000	85,000	대형	600	600	8,000	65,000	52,000	115,000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회 주차요금(1구획당)</th><th rowspan="2">1일 주차권</th><th colspan="3">월정기 주차권</th></tr><tr><th>최초 60분까지</th><th>60분초과후 30분마다</th><th>주간</th><th>야간</th><th>주.야간</th></tr><tr><td>소형</td><td>무료</td><td>500</td><td>5,000</td><td>50,000</td><td>40,000</td><td>85,000</td></tr><tr><td>대형</td><td>600</td><td>600</td><td>8,000</td><td>65,000</td><td>52,000</td><td>115,000</td></tr></table>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아) (현행과 같음) (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 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60분까지	60분초과후 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소형	무료	500	5,000	50,000	40,000	85,000	대형	600	600	8,000	65,000	52,000	115,000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후 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소형	500	500	5,000	50,000	40,000	85,000																																																											
대형	600	600	8,000	65,000	52,000	115,000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60분까지	60분초과후 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소형	무료	500	5,000	50,000	40,000	85,000																																																											
대형	600	600	8,000	65,000	52,000	115,000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2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3호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동일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4호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 보건 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초등학교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밖에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병,의원의 관리

제2장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제4조(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학생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등),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 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대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사업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치아우식증, 발치등)이며 구강질환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실시한다.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시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 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지역협의체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참여의료기관지정,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사업비)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인력 현황

1. 학생 치과주치의 기관명 : (직인)
 2. 학생 치과주치의 인력현황

가. 현 황(비상근 인력은 제외)

구 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전체 인력			
학생 치과주치의 담당인력			

※ 학생 치과주치의 담당 인력 : 전체 인력 중 학생치과주치의 전담 인력 수를 기재하고, 특히 담당 치과의사의 수는 학생치과주치의 기관의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사업을 전담하는 치과의 사 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학생 치과주치의 담당 인력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되 위 가. 현황표의 “학생 치과주치의 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구강건강관리 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기재합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서

청 구 기 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전화번호)				
지 급 계 좌				
은 행 명				
지급계좌번호				
예 금 주				
청 구 내 역				
치료 대상자				청구금액(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 계				

우리 기관에서 ~ 까지 실시한 학생 치과주치의 구강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1. 치료필요치아(총치 및 발치) : 개 _____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_____ 3. 치주질환 유, 무			구강	☐ 기본 구강건강지식	
			보건	☐ 개인 구강위생관리	
			교육	☐ 자가 불소이용법	
			예방 진료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				
	+				
	+				
	+				
	+				
	+				
	+				
	+				
	+				

(뒷면)

구강검사결과(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1. 치료필요치아(총치 및 발치) : 개 _____		구강 ☐ 기본 구강건강지식 보건 ☐ 개인 구강위생관리 교육 ☐ 자가 불소이용법	예방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진료 ☐ 치아흡메우기 ☐ 치석제거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_____			
3. 치주질환 유, 무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인력 현황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기관명 : (직인)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인력현황

가. 현 황(비상근 인력은 제외)

구 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전체 인력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담당인력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담당 인력 : 전체 인력 중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전담 인력 수를 기재하고, 특히 담당 치과의사의 수는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기관의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사업을 전담하는 치과의사 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담당 인력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되 위 가. 현황표의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구강건강관리 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기재합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서

청 구 기 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전화번호)				
지 급 계 좌				
은 행 명				
지급계좌번호				
예 금 주				
청 구 내 역				
치료 대상자				청구금액(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 계				

우리 기관에서 ~ 까지 실시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구강 보건 교육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예방 진료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3. 치주질환 유, 무			치료		☐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				
	+				
	+				
	+				
	+				
	+				
	+				
	+				
	+				

(뒷면)

구강검사결과(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구강 보건 교육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예방 진료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3. 치주질환 유, 무		치료	☐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			
	+			
	+			
	+			
	+			
	+			
	+			
	+			
	+			
	+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5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체육을 진흥하여 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
8. “시민건강프로그램”이란 시민의 체력증진을 통한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야외에서 주·야간에 운영하는 종목별 프로그램을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운영 및 지원
3.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5.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6. 레크레이션 보급과 아마추어·프로경기 육성
7. 기관·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8.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9.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스포츠마케팅
10. 그 밖에 시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5. 전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
8. 전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4. 생활체육교실 및 시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
8.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전라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체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제9조(학교체육의 지원)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장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지도·감독,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목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2. 「목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6호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목포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목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목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 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 범위) 제6조제1항의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 범위) 제6조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문화행사 등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체육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7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학교가 체육시설을 전용(연습포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9.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목포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10.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11.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12.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비 고
		일시사용		주 간		일시사용		주 간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유 달 경기장	필드	70,000	9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00,000	240,000	동시사용 2할 감
	트랙	30,000	50,000	50,000	70,000	80,000	100,000	120,000	150,000	
목포실내 체육관		70,000	90,000	90,000	11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야간사용 5할 가산
실내수영장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다이빙장		70,000	100,000	100,000	15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정구장, 테니스장 (코트당)		—	—	12,000	18,000	—	—	18,000	23,000	야간사용 5할 가산
목포시궁도장		—	—	20,000	30,000	—	—	40,000	60,000	1인당 1사대 주간

※ 비고 : 조례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학교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유 달 경기장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목포살내 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 수영장	일권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2시간 기준
	월회원		45,000	35,000	25,000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월강습		10,000원 적용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강습료 10퍼센트 감면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부주산 국제파크 골프장	1인당		2,000	1,000	1,000	1,000	500	500	36홀 사용료
목포시 궁도장	2시간 기준		2,000	1,000	1,000	1,000	500	500	
정구장 테니스장	2시간 기준	주간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2조(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제16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전라남도 또는 목포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목포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제1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학교가 체육시설을 전용(연습포함)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8.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9.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 행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
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
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관
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학교가 체육시설을 전용
(연습포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11.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
적으로 목포시 체육회장이 추
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10.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
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프로
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11.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
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
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12.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
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
하는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1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8호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목포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 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센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상생협력 지원)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시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19호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u>90일</u> <u>이내</u> 로 한다. <u>다만, 부득이한 사</u> <u>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u> <u>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u> <u>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u> <u>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u>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① —— ————— ————— ————— <u>120일</u> <u>이내</u> ———. <u><단서 삭제></u>

목포시 고시 제2018-18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99	하당로221번길 24	2018.12.17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8-1577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위헌(2001헌가9)이라는 이유로 민법을 개정하고 호적법을 폐지('08.1.1)하여 호주가 아닌 국민 개개인 별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을 제정하였으나, 여전히 호적법 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2007.1.25.)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통보 및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적용) 의 “제증명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규정에 따라 별표 1, 별표 2 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정비
 -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비 (안 제4조)
-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2007.1.25.)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통보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수료 삭제 [별표 1]
 - “무적자 사실 확인원” 삭제
 - “인감에 관한 증명”, “인감(개인)의 신고” 삭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17.12.21.)으로 정보공개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별표 2]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를 “무료”로 정비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을 “* 매체비용은 별도”로 정비
-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삽입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17. ~ 2019. 1. 7.(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붙임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560)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통보(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266)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7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061-270-3667),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 법안의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열린행정-시정 소식-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본적**” 을 “**등록기준지**” 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증명)			
1. <삭제>			
(1) <삭제>			
2. 신상에 관한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1통	1,000원	
(2) <삭제>			
(3) 독자 사실 확인원	1통	1,100원	
(4) 부재자 사실 확인원	1통	1,100원	
(5)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	1통	1,100원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700원	
(2) 중소기업자	1통	6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600원	
4.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800원	
(2) 생산실적	1통	600원	
(3) 납품실적	1통	600원	
(4) 건물사용	1통	600원	
(5) 공장 원료 수요	1통	6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6) 공장등록증명서	1건	1,000원	
(7)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원	
(8) 실수요자 사실 확인원	1통	1,0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1,000원	
(10)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1,000원	
(11) 소유사실확인원	1통	1,000원	
(12)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원	1통	1,000원	
(13) 관상수목 자기생산 사실 확인원	1통	4,000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등본	1통	900원	
○ 토지도면	1통	900원	
○ 건물도면	1통	900원	
(2)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500원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000원	
(2) 표준주택설계 도면	1필지	2,500원	
(3)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원	
(4)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800원	
(5)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8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6) 도시계획 제87조 증명	1필지	1,500원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1건	800원 단,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원	
(2)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원	
(3) 보상금 지불명령	1통	1,000원	
9.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500원	
10. 기타 제증명			
(1)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대장에 기재발급 ○ 열 람	1필지 1필지 1필지	800원 400원 300원	
(2)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열 람	1필지 1필지 1필지	800원 800원 300원	
(3)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4)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통	700원	
1. 일반행정 관계			
(1) <삭제>			
(2)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3) 공유재산의 대부 산책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① (4) 국(공)유재산 양도양수 승인신청	1건	3,000원	
② (5) 국(공)유재산 사용료 완납증명	1건	700원	
③ (6)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900원	
④ (7)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2. 산림 관계			
⑤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⑥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2,000원	
⑦ 3. 농축산 관계			
⑧ (1)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 신청	1매	1,000원	
⑨ (2)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4,000원	
(3)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⑩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0원	
⑪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4,000원	
⑫ (3)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	1건	100,000원	
(4) 유통관련업 등록, 허가, 신고	1건	20,000원	
(5) 유통관련업 등록, 허가, 신고변경	1건	10,000원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8)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9)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건		10,000원	
(1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 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1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1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1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규) 신고	1건		1,500원	
(1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변경) 신고	1건		1,500원	
(16)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7)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1건		1,500원	
(18)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	1건		1,500원	
(19)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원	
(20)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2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5. 건설 관련					
⑬	(1) 도로 점용(굴착)허가 신청	1건		1,000원	
⑭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0원	
(3)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6)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3,000원	
(7)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3,000원	
(8)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500원	
(9)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3,000원	
(10) 토지사용 승락서	1건	3,000원	
(11)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변경)	1건	3,000원	
(1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3,0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0원	
(1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15) <삭제 2017. 6. 5.>			
(16) <삭제 2017. 6. 5.>			
(17) <삭제 2017. 6. 5.>			
6. 보건사회 관계			
(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1건	20,000원	
(3)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1건	20,000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5,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7) 치과 기공소 인정신청	1건	10,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28,000원	
(10)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6,500원	
(11)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28,000원	
(12)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변경신고	1건	26,500원	
(13)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4)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8,000원	
(15) 아·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16) 아·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17) 공중 위생업소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18)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1건	10,000원	
(19)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7.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삭제 2015. 10. 12.>			
(4) <삭제 2015. 10. 12.>			
(5) 출판사 등록신청	1건	4,000원	
(6) 출판사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	4,000원	
(7)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8)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9)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0)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1)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6)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변경신청	1건	5,000원	
(17)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18)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1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0)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2)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3)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7)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28)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9)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0)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8. 수산업에 관한 사항			
(1) 연안어업 허가	1건	2,500원	
(2) 구획어업 허가	1건	4,500원	
(3)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 신청	1건	3,000원	
(4)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000원	
(5)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6) 어업면허 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원	
(10) 관리선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1)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연장 신청	1건	3,000원	
(12) 토지(공작물)사용 허가	1건	7,000원	
(13) 토지출입 허가	1건	4,000원	
(14)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15)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16) 어장도 교부	1건	1,500원	
(17) <삭제 2017. 6. 5.>			
(18) 수산물가공업 변경등록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9) 수산물 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1건	2,000원	
(20) 수산시설물 처분 승인	1건	3,000원	
(21)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	1건	6,000원	
(22) 어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3)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원	
(24) 어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5) 어업 개시신고	1건	3,000원	
(26) 어업신고	1건	1,500원	
(27) 어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8)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삭제 2017. 6. 5.>			
(30) 어업면허 신청 기간의 연장	1건	4,5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32) 정치망 어업의 가두리 시설 통지	1건	3,000원	
(33) 종묘살포 신고	1건	3,000원	
(34) 월동장(월하장) 신고	1건	6,000원	
(35) <삭제 2017. 6. 5.>			
(36)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 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37) 토지사용(제거제한출입) 허가사항 변경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38) 어장청소 신고	1건	3,000원	
(39) 어업권(지분) 이전등록	1건	4,500원	
(40)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1) 낚시어선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	1건	3,000원	
(42) 낚시 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43) 포획·채포 금지 해제허가	1건	4,000원	
(44)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45)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46) 마을어장(협동양식어업)안의 낚시터 지정	1건	6,000원	
(47) 마을어장(협동양식어업)안의 체험 어장 지정	1건	6,000원	
(4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9)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 치망어업)	1건	9,000원	
(5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5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 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원	
(52)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53)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54)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55) <삭제 2017. 6. 5.>			
(56) 어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57)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58) <삭제 2017. 6. 5.>			
(59) 어업허가 유예	1건	1,500원	
(60) 한시어업 허가	1건	2,000원	
(61) 한시어업 연장 허가	1건	2,000원	
(62)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원	
(63)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1건	800원	
(64)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65)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66)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원	
(67)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68)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69)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70)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1건	2,000원	
(71)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	1건	1,000원	
(72)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73)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7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75) 어선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1건	3,000원	
(76) <삭제 2017. 6. 5.>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9.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원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1건	10,000원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10. 관광업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제외) 신고	1건	30,000원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에 관한 사항	1건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 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u>본적</u> 주소 또는 거소 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 ----- ----- ----- -----다만, <u>등록기준지</u> ----- ----- -----
② ③ (생 략)	② ③ (생 략)(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증명)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삭제>				
(1) 인감증명	1통	600원			(1) <삭제>				
2. 신상에 관한 증명					2. 신상에 관한 증명				
(1)					(1) (현행과 같음, 생략)				
(2) 무적자 사실 확인원	1통	1,100원			(2) <삭제>				
(3)~(5)					(3)~(5) (현행과 같음, 생략)				
3. ~ 10.					3. ~ 10. (현행과 같음, 생략)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2. 일반행정 관계				
(1) 인감(개인)의 신고	1건	600원			(1) <삭제>				
(2)~(7)					(2)~(7) (현행과 같음, 생략)				
2. ~ 11.					2. ~ 11. (현행과 같음,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사본(종이출력물)	문서·도면·사진 등		○ (현행과 같음, 생략)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사진필름의 복제 ○ 사진필름의 인화	필름·테이프 등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사본(종이출력물)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슬라이드의 복제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전자파일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전자파일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 고 > 1. (현행과 같음, 생략) 2. (현행과 같음,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첨부 1】 -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597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목 포 시 장

□ 어업면허 처분 내역

어업의 종 류	포 획 채취물	면허번호	수면의 위 치	면 적	면 허 기 간	처 분 연월일	어업권자
마을 어업	수산 동식물	제02020호	연산동 삽진지선	10ha	18.12.14-28.12.13 (10년간)	18.12.14.	광산어촌계
해조류 양식	김	제10057호	연산동 광산지선	12ha	18.12.14-20.12.13 (2년간)	18.12.14.	광산어촌계

시 정 알 림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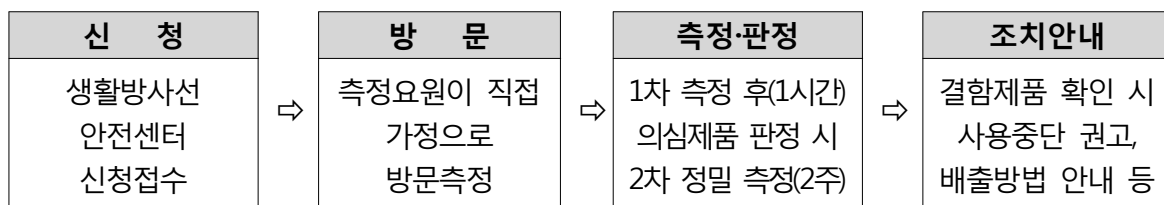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단속 안내

- 이면도로란 ?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영 도로로써 개인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속기간 : 연 중
- 단속대상 : 내 집(상가) 앞 도로에 놓은 불법 적치물(폐타이어, 물통, 화분 등)
※ 위법행위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최고 150만원) 부과

건설과 ☎ 061-270-8348

라돈 측정 방문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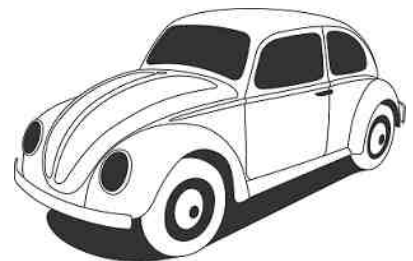
- 신청대상 : 라돈방출이 의심되는 생활제품을 사용하는 전 국민 누구나
※ 단, 실내 공기질측정 및 건축자재 제외
- 진행절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ins.re.kr/radon), 콜센터 ☎ 1811-8336
※ 상담가능 시간 : 월~금 09:00~18:00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18. 12. 16.(일)~12. 31.(월) [16일간]
- 납세의무자 : 2018. 12. 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모바일 등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 R S : ☎ 080-270-8880(무료), ☎ 061-270-8880(유료)
 - 모바일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 체납에 대한 조치
 - 가 산 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증가산금 :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독촉기간 경과 후 그 익월부터 매월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60회(72%) 징수
 - 체납처분 : 독촉기간 경과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차량 등 재산압류



세정과 ☎ 061-270-8454, 3448

시 정 알 림 판

동절기 이면도로 폭설대비 안내

- 우리시에서는 대설특보 발령 시 시내일원 간선도로 6개 노선에 제설차량 6대로 제설작업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길이 많은 원도심 이면도로는 1톤 화물트럭에 소형제설 살포기를 장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간선도로변은 원활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과 노상 적치물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동절기 폭설대비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이면도로, 골목길 주차 금지
내 집 앞에 노상 적치물 설치 안 하기



건설과 ☎ 061-270-8348

목포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확대

- 기 간 : 2019. 1. 1.(화)부터
- 내 용 : 무료 주차시간 확대(30분→60분)
- 대 상 : 목포시 운영 유료공영주차장 12개소



연번	주차장명	위 치	면수	비고
계	12개소		740	
1	호남공영	목포역 뒤(호남동1-864)	64	
2	중앙공영	중앙초등학교 옆(호남동 9-3)	53	
3	원형1	롯데마트 옆(상동1133)	104	
4	원형2	CGV평화광장점 옆(상동1130)	101	
5	동아공영	우리은행 뒤(상동868-5)	52	
6	남교공영	남교동 57	62	
7	행정타운	트윈스타 건너편(남교동 88-16)	100	
8	남교가변차로	수문로 가변차로 구간	45	노상
9	버스공영	여객선터미널 앞(항동 6-33)	20	
10	죽동1	구)성산교회(죽동 51)	79	현 무료개방 중
11	죽동2	나주곰탕(죽동 217)	27	"
12	오거리문화센터	구)동원본사(무안동 3-7)	33	"

※ 무료개방 중인 주차장은 유료 전환시 적용

○ 변경 요금표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비 고
	주차 후 60분	60분 초과 후 30분마다			
요금	무료	500	5,000	50,000	※ 소형(승용, 16인승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차)에 한함

교통행정과 ☎ 061-270-8683